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혐의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6월 실형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말 라우시 물수를 명령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

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강화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은행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 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인 하나로 고려될 수 있

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를 회복했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관습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목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최 전 사장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고, 장 전 실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특검에 영장 집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당시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공모'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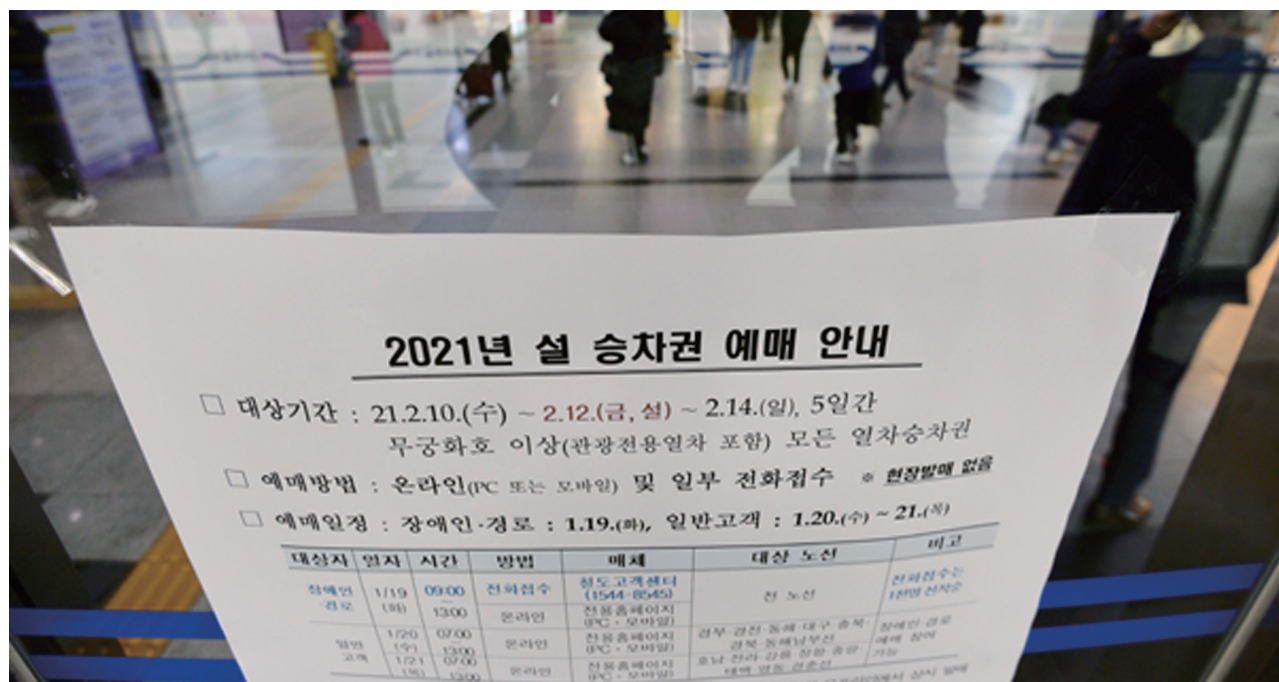


2016년 11월4일 ■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에 고발
2017년 1월12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조사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구속영장 청구
17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기각
28일 ■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4월7일 ■ 이재용 등 5명 1차 공판
■ 박영수 특검 '가장 고질적·전혀적인 정경유착 사건'
■ 삼성 측 '특검, 기공의 틀로 승계 급조'
7월12일 ■ 이재용 등 5명 3차 공판
■ 정유라 '최서원, 삼성 소유 말 '네 것처럼 타라' 했다'
8월7일 ■ 특검,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5일 ■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12월22일 ■ 이재용 등 황소심 16차 공판
■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정황 추가.
27일 ■ 특검, 황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 법원, 황소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석방
■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8월29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 삼성 승계작업 인정...이재용 지배강화 목적
2020년 1월17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전문심리위원 도입'
2월24일 ■ 특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열려'
4월17일 ■ 법원, 특검 '기피 신청' 기각...'열려 없다'
5월6일 ■ 특검, '기피 기각 결정' 대법에 재항고장 제출
6월11일 ■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확정
9월18일 ■ 대법원, '기피 기각 결정' 재항고 기각...'객관적 사정 없어'
12월7일 ■ 전문심리위원회, 준법감시위 최종 의견
30일 ■ 특검,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 장충기·최지성·박상진 징역 7년 구형...황성수 징역 5년 구형
2021년 1월14일 ■ 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18일 ■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최지성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장충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박상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1.01.18 전천주 그래픽 기자 618blue@newsis.com



설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18일 동대구역에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설 승차권 예매는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된다.

응급구조사 폭행 후 방치 숨지게 한 40대 살인혐의 적용

“고의성 있다” 살인혐의 구속기소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전자A(4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12시간 넘게 직원 B(44)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을 발생하게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사무실 바닥

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살인의 고의성 방치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전자A(4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12시간 넘게 직원 B(44)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을 발생하게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사무실 바닥

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원지검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 절차 진출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